

남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75
----------	-----

제출연월일 : 2021. 8. 25.

제안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어 조례 제정 필요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권한을 조례로 이양하여 지방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교육의 유예 및 교육계획 수립, 교육 방법, 강사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

다. 교육 통지서 송부, 교육 불참자 통지 및 과태료부과징수,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비용추계서 : 붙임1

5. 성별영향평가 결과 : 붙임2

남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

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유예)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

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불참자 통지 등)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남양주시 노래연습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는 사항으로 예산 소요가 예상되나 기 확보 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산 소요가 예상되나 기 확보 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4. 작성자

문화예술과장 박은경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문화예술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1A경기남양047:개선의견)

1. 문화예술과-8002(2021.05.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오니 검토 반영한 계획서를 2021.05.27.(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반영 계획서 제출방법 (GIA 시스템)

1.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성별영향평가대기 > 나의과제 - 검토의견통보서의 상태 값인 [통보(개선) 클릭
2. 검토의견통보서의 개선의견 내용을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반영계획서 작성」 단추를 클릭하여 반영 계획 및 결과 작성 후 저장
3. 저장 단추 오른쪽의 기안 단추를 클릭하여 체크리스트(성별영향평가서) 기안 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안 결재 진행

※ 시스템 사용 문의 : GIA시스템 콜센터 (T. 02-3789-4450)

붙 임 : 검토의견 통보서(2021A경기남양047) 1부. 끝.

남 양 주 시 장

주무관

여성정책팀장

여성아동과장

복지국장

전결 2021. 5. 24.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12457

(2021. 5. 24.)

접수 문화예술과-8230

(2021. 5. 24.)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양주시청 제1청사)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491

팩스번호 031-590-2269

/ kwonps@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1A경기남양047		
정책명	남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당자명	조진희	전화번호 031-590-2798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6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강사는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제6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2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제4조(교육의 유예)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 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2021년 05월 25일

문화예술과 부서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